

延支給 방식, 輸入原資材 保証金 면제

金融團은 輸入費用 절감을 통한 企業의 對外 競爭力 강화를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輸出用 原資材 등을 延支給 등 방식으로 들여올 경우에는 輸入保証金を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3천억원에 달하는 行政担保金이 풀려나가게 되어 企業의 資金사정 완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29日 金融團은 銀行長 會議의 의결을 거쳐 輸入保証金收納 규정을 일부 개정, 延支給·分割支給輸入 및 DA方式으로 輸出用 및 內需用 原資材 등을 輸入할 경우에는 일체 保証金を 징수치 않기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들 品目이라 하더라도 一覽払 방식으로 들여올 때에는 최저 10% (FOB輸入價額) 이상의 保証金を 現金 또는 自己앞 手票로 계속 징수토록 하였다.

이는 1. 14 經濟活性化 대책의 일환으로 2월부터 輸入担保金制度를 사실상 철폐키로 하였으나 協定上 一覽払 또는 延支給을 막론하고 輸入信用狀 개설과 함께 최저 10% 이상의 輸入保証金を 外國換銀行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貿易業界의 資金부담 완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우려, 이를 막기위해 취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延支給 등 방식으로 輸出用 原資材 등을 輸入키로하고 信用狀을 개설할 경우에는 一覽払에서와 같은 10%~100%의 輸入保証金 징수의무가 면제케 된다. 이날 韓銀당국자는 「延支給輸入 등에 保証金を 면제키로한 것은 企業의 輸入費用 절감을 통한 國內物價 안정 및 對外 輸出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데 主眼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原油, 原木, 原綿, 古鉄 및 原鉍石 등 약 480여개에 달하는 延支給대상 品목이 保証金 면제혜택을 받게됐다」고 말했다.

한편 業界는 延支給 輸入品目的 경우 최근 內需用 原資材 선정방식을 네거티브로 轉換, 계속 증가할 추세에 있으며 이들 品目的 대부분이 꼭 輸入해야 할 原資材들이기 때문에 担保金を 保証金으로 이름만 바꿔 징수할 경우 業界의 資金부담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 이의 철폐를 촉구해 온 바 있다.

특히 延支給 대상 品目的 輸入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10%만 내더라도 막대한 자금이 동결된다고 지적, 웬만한 企業들의 경우, 포괄담보로 채권확보가 확실한데도 保証金を 받아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었다.

Bruns Bros, Inc.社 構買團 訪韓

美國 오레곤州 Portland 소재 Bruns Bros, Inc.社는 韓國으로부터 年間 2천~6천만弗 규모의 CB Transceiver 등 自動車部品 輸入을 희망 하는데, 今年 3月 同社 會長인 Mr. Jack H.

Bruns氏가 이끄는 오레곤州 構買使節團이 訪韓할 예정이다. 한편 同社는 在美 교포가 社長으로 되어있는 United Industries Inc.社를 子會社로 設立하여 本格 對外 貿易에 뛰어들고 있다.

공지사항

관심있는 国内業체를 위해 주소를 소개한다.

○ 会社名 : Bruns Bros, Inc.

○ 설립년도 : 1968年

○ 子会社 : United Industries Inc.

Mr. Jay S. Lee (在美교포)

3225, SE. 14th Ave, Portland

Oregon 97202, U.S.A.

Tel : 503-231-7573

○ 資本金 : 1,000만弗

○ 輸出対象国 : 韓国, 日本, 프랑스 등

○ 輸入品目 : 自動車部品 (배터리, 모터마운트, 케이블하우징), CB Transceiver, Radio

各級学校 실험실습 機資材 카탈로그 수집

문교부에서는 각급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카탈로그를 비치하여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 구매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바, 国内生産 실험실습 기자재에 대한 資料가 부족하여 會員社 여러분

께 협조를 부탁하며 會員社에서 生産하고 있는 각종 실험실습 기자재가 있으면 카탈로그를 本會 調査課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問議電話 : 778~0913/8 調査課)

國有 特許權 활용 안내

특허청에서는 지난 1月27日 국유특허권의 처분, 관리규정 제 3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활용과 기업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1. 국유특허권의 내용 <표 1 참조>

2. 활용 방법

국유특허권은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고자 하는자가 없거나 그 실시에 있어 특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권리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할 수 있음.

3. 신청절차

국유특허권 활용을 희망하는 민간인이나 정부기관은 소정의 신청서를 특허청 지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 타

국유특허권 활용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 (76. 4. 21 대통령령 제 8095호) 및 국유특허권의 처분관리규정 시행규칙 (76. 10. 28 상공부령 495호)을 참고하거나 특허청 지도과(서울 강남구 서초동 58-3, 제일생명빌딩, 전화 568~6073, 교환 568~8150, 8164)로 문의바람.

공지사항

권리번호	권리의명칭	존속기간	발명기관	비고
특허제 3415호	대자동시외교환기의 코드회로	70. 9. 11~ 82. 9. 10	체신부 전기통신시험검사소	
" 3416호	" 다이알회로	"	"	
" 3416호	" 좌석조정회로	"	"	
" 3508호	교환대 입증계기	71. 2. 28~ 83. 2. 27	"	
" 3559호	휴대용 통화량측정기	71. 5. 6~ 83. 5. 5	"	
" 3929호	공중전화 3 분절단장치시험기	72. 10. 31~ 84. 12. 30	"	
" 3930호	" 시험기제외	72. 12. 31~ 84. 12. 30	"	
" 3931호	전화다이알시험기	72. 12. 31~ 84. 12. 30	"	
" 3998호	자동루우드시험기	73. 6. 1~ 85. 5. 31	체신부 서울체신청	
" 4074호	키센터	73. 9. 25~ 85. 9. 24	체신부 전기통신시험검사소	
" 4727호	시외계전기군시험기	75. 5. 24~ 87. 5. 23	체신부 전기통신시험검사소	
" 5691호	반방해 전파안테나	77. 11. 18~ 89. 11. 17	체신부 전파연구소	
실용신안 9721호	절단신호발생장치	73. 3. 26~ 83. 3. 25	체신부 전기통신시험검사소	
" 10825호	송화갑	73. 12. 7~ 83. 12. 6	"	
" 10826호	자석전령음향조절	"	"	
" 10827호	수화갑	"	"	
" 10891호	통신용시내선도 단자함	73. 12. 21~ 83. 12. 20	"	
" 11754호	보안책	74. 7. 31~ 86. 7. 30	" (중앙정밀과공유)	
" 12113호	전화선 간이시험기	75. 3. 18~ 85. 3. 17	"	
" 12201호	통신용 인공철 개폐기	"	"	
" 13857호	도수계 "0" 복구장치	76. 8. 14~ 86. 8. 13	"	
" 14503호	통신용 휴대탐등조합틀	77. 9. 22~ 87. 9. 21	"	
" 14504호	통신용저하장애위치시험자	77. 10. 5~ 87. 10. 4	"	

특정 研究開發사업 수행안내

科學技術處에서는 技術드라이브 政策의 일환으로 '82年度부터 시작되는 특정연구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企業의 技術開發을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技術開發資金이 부족하거나 또는 위험부담 등으로 企業單獨 開發이 어려운 핵심 산업기술의 研究開發費 中 일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정 研究開發사업수행 안내

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드라이브정책의 일환으로 기술개발자금의 부족 및 높은 위험부담 등으로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산업기술을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것임.

2. '82년도 연구비 총예산 : 140억원

3. 연구개발 대상분야

- 가. 반도체 및 컴퓨터기술개발
- 나. 정밀화학공업 기술개발
- 다. 기계공업 고도화기술개발
- 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안전성 확보 기술개발
- 마. 시스템산업 기술개발
- 바. 기타 핵심산업 기술개발

(유전공학, 고분자화학공업 기술개발 등)

4. 연구과제의 신청

- 연구개발 대상분야 중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단위 연구과제를 별첨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82. 2. 15까지 과학기술처에 신청함.
- 희망하는 연구기관과 연구책임자를 추천하되, 연구책임자는 희망한 연구기관소속 연구원이어야 함.
- 기업이 추천하는 연구기관은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 연구조합이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음 요건을 갖춘 연구

소를 말함.

- 자연계학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30인 이상 상시보유
- 독립된 연구시설보유

5. 신청기업의 자격

신청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단독기업 또는 다수기업의 연합체(연구조합 포함)

6. 연구과제의 선정

기업에서 신청한 적정과제는 '82년도 특정연구개발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며, 정부의 예산을 초과하거나, 동일과제를 2개이상의 기업이 각각 경합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가. 신청기업의 연구비부담 정도

나. 신청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정도

다. 신청기업의 과거의 연구실적

※ 특히, 신청기업의 연구비 부담율이 높은 과제 및 다수기업의 공동신청 과제에 우선권 부여

7. 추진절차

가. 기업체가 신청한 연구과제중 '82년도 특정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는 해당기업에 통보함.

나. '82년도 특정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기업은 연구기관의 長과 연구계약(출자계약 포함)을 체결함.

다. 연구기관의 장과 기업의 대표간에 체결한 연구계약(출자계약 포함)을 토대로 연구책임자가 특정연구개발사업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함.

라. 과학기술처장관은 동연구계획서를 검토한 후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수행토록 조치함.

8. 연구비의 출원

가. 기업부담연구비는 현금과 현물(인력, 시설, 기자재 등)을 포함하며 현금부담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연구기관의 장에게 현금 또는 은행지불보증 약속어음 형태로 지급하여야 함.

나. 정부출연연구비는 기업의 연구비(현금) 지급비율, 사업의 규모, 사업착수시기 및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분할 지급

9. 연구성과의 무상양여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로서 발생한 공업소유권, 시작품 등은 정부와 기업이 연구비 부담비율에 따라 공유하되, 정부소유권

은 당해기업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10. 기술료의 납부

특정연구 개발사업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한 기업은 협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화한 제품의 매출액의 일정율로 당해 연구수행에 소요된 정부출연금 상당액을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에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함.

11.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준수
기업의 요청이 있을시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심의실 담당연구조정관실에 문의바람.

- 종합연구 조정관실	정부종합청사	1908호	720-4229, 2738
- 기계연구 조정관실	"	"	720-4233
- 전기전자연구조정관실	"	"	720-3454
- 화공연구 조정관실	"	"	720-4558
- 동력자원연구조정관실	"	"	720-2739

研究開發事業 主要課題 內容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개발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3.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가. '82년도
나. '83년도
4. 추진전략 및 방법
가. '82년도
나. '83년도
5.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가. '82년도
나. '83년도
6. 신청기업체의 애로기술내용(현황 및 문제점)

7. 과거의 연구개발 실적
8. 진행중인 연구개발 과제
9. 추정소요예산 내역 및 기업출자 내역
가. '82, 83년도
1) 추정소요예산 내역
2) 기업출자내역
10. 신청 기업체의 현황
가. 설립년월일:
나. 자본금: 백만원
다. 생산제품
라. 부설연구소(실)의 현황
1) 연구소(실)명:
2) 설립년도:
3) 연구원수:
4) '82년도 연구예산:

특정연구개발과제 신청서(산업기술연구개발 과제)

분	야	()	()	()
연구과제명				
추정연구비 ('82년도 소요액)	- 정부출연금: 천원(%) - 정부 이외의 자의출연금: 천원(%) 계 천원 - 기업체 출자금: 천원(%)			
희망하는 연구기관		희망하는 연구책임자		
신청 기술 기업	기업체명		대표자	
	주	본사	전화	
	소	공장	전화	

당사는 연구개발비를 귀처와 **공동으로** 부담하여 상기 특정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를 수행하고자 신청합니다.

1982.

대표자

직인

〈企業出資 내역〉

(단위 : 천원)

기관명	현금	현					물				
		연구인력		기자재등 시설			시약등 기타				
		인원	인건비	품명	수량	금액	품명	수량	금액		
계											
총계											

공지사항

마.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액

- 1978년 이전	천원
- 1979년도	천원
- 1980년도	천원
- 1981년도	천원
계	천원

기 재 요 령

1.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표지에 대표기업을 표기하고 다른 공동참여 기업은 9항의 2) 기업출자내역 중에 명기할 것.
2. 1항의 연구의 필요성란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국내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3. 2항의 연구개발목표란은 개발되어야 할 제품의 성능, 품질수준 및 기술수준을 정량적(제품의 수명, 가격 및 기술 내용을 비교 설명)으로 서술할 것.

특히 '82년도와 '83년도 연구개발목표를 구

체적으로 서술할 것.

다만, '82년도에 종료되거나, '83년도에 착수할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83년도 또는 '82년도 해당 기재사항은 생략할 수 있음.

(이하 동일함.)

4. 3항의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란은 제품의 품질향상, 공정개량, 원가절감 및 신기술개발 내용과 범위를 기술할 것.
5. 6항의 신청기업체의 애로기술 내용란은 신청기업체가 해결하여야 할 당면한 애로기술 내용 및 이를 개발할 경우의 실용화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6. 9항의 1) 추정소요예산 내역란은 정부출연금, 정부 이외의 자의출연금 및 기업체 출자금의 합계액을 인건비, 기자재구입비, 시약 및 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 등 실제 연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비목별로 구분 명기할 것.

* 정부이외의자의 출연금이라함은 단체의 출자금, 외국의 지원금 등을 말함.

公知事項에 관한 내용은 본회 各課에서 항상 문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業界의 많은 이용이 있기를 바랍니다.

(問議 : 778-0913/8)